보도자료 시행일:2021.5.12.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박미향 / 담당자 : 이재진 정책국장(010-2784-4111) / E-mail : kctuedub@daum.net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29 예안빌딩 6층 / http://www.hakbi.org/ 전화 02-847-2006 / 팩스) 02-6234-0264

■ 아래와 같이 보도 자료를 보내 드리오니,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14년째 무기계약 전환 희망고문, 차별적 처우!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5월 12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각시도교육청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00지부

■ 순서 :

○ 여는말
-
○ 연대사
-
○ 규탄발언 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초등스포츠강사분과
○ 규탄발언 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초등스포츠강사분과
○ 규탄발언 3.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초등스포츠강사분과
○ 기자회견문 낭독
- 현장조합원
○ 질의응답

■ 기자회견 취지

○ 초등스포츠강사는 2008년,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초등체육수업의

정상화 지시, 국가정책 과제인 “학교 체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 후 확대 시행되었다. 초등스포츠강사는 담임교사 책임 하에 체육수업 협력 지도, 정규수업 외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등 아이들을 위해 14년간 학교체육 활성화, 교사의 체육수업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온 전문 인력이다.

○ 초등스포츠강사는 2017년 7월 정부 가이드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의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라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 비정규직이 아닌 연중 계속되는 업무,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는 업무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 된다.

○ 그러나 2017년 9월 9일 교육부는 전심위(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초등스포츠강사를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각시도교육청들 전심위에서 기간제법·학교체육진흥법을 적용받고 동일한 자격(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6항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 채용된 다른 직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것과는 차별적인 결정이다.

○ 2018년 9월 11일 교육부는 초등스포츠강사를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나 “학교회계직에 준하는 처우개선과 계약기간 연장, 계약절차 간소화 등 고용안정 방안 및 초등 스포츠강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전심위 결정사항은 권고사항일 뿐 지킬 의무가 없다.’라며 무기계약 제외 결정만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을 뿐 “학교회계직에 준하는 처우개선과 합리적 제도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방안 마련 이행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같은 권고임에도 무기계약전환은 기필코 지키겠다는 것이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권고사항이라 지킬 의무가 없다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 초등스포츠강사는 각 시도교육청들이 14년동안 진행해온 사업이고 14년동안 같은 초등스포츠강사가 근무를 하고 있다.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며 또한 상시지속적인 업무이다. 14년동안의 희망고문을 멈추고 이제는 초등스포츠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 외 초등스포츠강사의 열악한 현실과 비정규직으로 겪는 현장에서의 차별, 부당함 등을 기자회견에서 알릴 예정임.

<기자회견문>

학교체육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초등스포츠강사는 2008년 초등학교 현장에 처음 배치되었다. 이후 초등스포츠강사는 아이들을 위해 14년째 학교체육 활성화, 교원의 체육수업에 대한 부담 경감 등에 헌신하고 있다. 초등스포츠강사의 이런 노력은 관리자, 교사, 학부모, 학생 대상의 만족도 설문에서 95% 이상의 만족도를 얻으면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제 초등스포츠강사는 아이들의 꿈과 미래 그리고 학교체육을 위해 현장에 필수적인 구성원이 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초등스포츠강사는 14년째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교육청들은 상시지속적 업무로 인정하지 않고 매년 12개월 계약을 반복하고 각종 수당과 복지제도에서도 학교 구성원들과 차별을 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용불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초등스포츠강사는 매년 재계약 여부 때문에 불안에 시달린다. 학교 현장에서의 차별과 갑질을 견뎌야 한다. 여성 초등스포츠강사가 임신한 사실로 인해 학교장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일이 있었고, 한 여성 스포츠강사는 임신으로 인해 다음 년도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봐 임신한 사실을 숨기다가 유산한 일도 있었다. 두 자녀의 부모인 여성 스포츠강사는 고용 불안과 근무현장에서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일을 그만 두어야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초등스포츠강사가 기간제, 계약직으로 현장에서 차별받는 일은 무수히 많다. 이래도 우리의 울분 섞인 요구가 무리한 것인가?

기간제, 계약직 신분이면 임신도 출산도 육아도 차별받아도 되는 것인가. 최근 기본적인 인권과 모성보호 보장의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고 때문에 법제도적 보장 범위도 넓혀가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 교육감들은 시대의 요구와 변화에 역행할 것인가.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적용받아야 할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초등스포츠강사도 차별없이 적용받을 수 있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더불어 초등스포츠강사는 학교비정규직 내에서도 가장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13년을 근무해도 1년을 근무해도 급여가 동일하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등스포츠강사를 즉각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원 자격증으로 채용된 자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라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한 수용 거부 이후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 회피를 위해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까

지 개정하는 꼼수를 부렸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이다. 4년이 지난 오늘 교육부는 예전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교육청들은 기관의 판단에 따라 전환제외자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가능하다는 노동부의 무기계약 관리규정 표준안을 근거로 초등스포츠강사를 즉각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는 교육부, 교육감이 결단을 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중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초등스포츠강사의 서러움을 모른 체 말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그 초심, 노동철학을 상기하며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학교체육활성화에 헌신해온 초등스포츠강사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공무직원과 같은 처우개선,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

초등스포츠강사의 요구는 교원,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14년 동안의 희망고문을 끝내고 이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학비노조 초등스포츠강사분과는 무기계약 전환과 고용안정, 차별없는 처우개선 갑질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기간제 신분이라 대출 이자도 더 높다! 무기계약 전환하라!”
“14년을 근무했다! 상시지속적 업무로 인정하고 무기계약 전환하라!”
“계약직 신분이라 육아휴직도 제대로 못 쓴다! 무기계약 전환하라!”
“기간제도 서러운데 수당까지 차별이냐! 차별없이 수당 지급하라!”

2021년 5월 1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OO지부

<붙임자료>

1. 초등스포츠강사 사업개요

○ (관련법령) 학교체육진흥법 (2012년 1월, 신규 제정)

> 제2조 (정의)
> 7. "스포츠강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 제13조 (스포츠강사의 배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목적) 2008년,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초등체육수업의 정상화 지시, 국가정책 과제인 "학교 체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 후 확대 시행

- 2008년 9월 "체육보조강사 지원 시범 사업" 으로 시작, 2009년부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 으로 변경 및 확대 추진

> <2009년도 스포츠강사 지원 계획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 **1** 사업목적
> □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체육수업 부담 경감 및 체육수업의 흥미 유발을 통한 학교 체육 활성화 도모
> □ 참여 학생이 스포츠에 대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생활체육 참여 동기 부여
> **2** 기본방침
> □ 새 정부의 국가 정책 과제인 "학교 체육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관리 주체가 되고 시·도 및 시·군·구 생활체육 협의회의 주관 및 참여 사업으로 추진
> □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연계 가능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 □ '09년도는 분위기 조성 및 준비 단계로 하여 '10년도부터는 지속적으로 확대 배치 활동 전개

○ (사업주관)

- 2008~2009년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계약, 학교에 파견하는 형식
- 2010년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선발, 학교장과 계약
- 2012년부터 일부 지역 학교장 선발로 변경

2. 초등스포츠강사 근로조건 및 인원현황

○ 주요업무 : 체육수업 지원 (담임교사 책임하에 체육수업 협력 지도), 정규수업 외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체육교구 및 시설관리,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업무 지원, 체육대회 등 체육 관련 행사지원 등 학교체육 관련 업무

○ 근로시간 : 1일 8시간 근무, 주 21시수 (스포츠클럽 최대 3시간 포함) 수업지도, 방학 중 2주간 1일 3시간 이내의 프로그램 운영

○ 계약형태

- 무기계약 전환 제외 대상으로 분류

- 매년 12개월 단위로 반복 계약

○ 매년 퇴직금(1개월분 임금) 지급 ※ 강원, 경남, 경북, 인천 적립

○ 임금현황 : 근속수당, 상여금, 맞춤형복지비, 자녀학비보조금 등 각종 수당 미지급 또는 지역별 금액 상이함.

지부	처우개선수당							기타			
	급식비	근속	가족	명절	상여	맞복	자녀학비	순회	연수비	연차 누적	퇴직금 적립
강원	○		○	○	90만원	55~60만원				○	○
경기	○			○		70만원					
경남	○	○	○	○	100만원	60~80만원	○	8만원	연1회 26만원	○	○
경북	○		○	○	30만원	55만원				○	○
광주	○		○	○	30만원	55만원	○			×	×
대구	○		○	○	30만원	55만원			연1회 20만원		
대전	○		○	○	90만원	55~60만원	○				
부산	○	○	○	○	90만원	55만원	○		연1회 26만원		
서울	○		○	○	30만원	55만원	○			X	X
세종	○		○	○	30만원	55만원					
울산	○		○	○	90만원	55만원	○		연1회 10만원		
인천	○		○	○	90만원	55만원	○		연1회 26만원	○	○
전남	○		○	○	90만원	55만원		8만원	연1회 20만원		
전북	○		○	○	30만원	55만원					
제주	○		○	○	30만원	55만원		5만원			
충남	○	○	○	○	90만원	55~60만원	○	8만원	매월 5만원		
충북	○		○	○	30만원	55만원	○	5만원			

○ 연도별 인원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획	1,000	1,000	1,300	1,500	3,587	6,053	3,077	3,000	3,000	·	·	·	·
배치	825	887	1,224	1,500	2,852	3,797	2,872	2,406	2,098	2,020	1,966	1,951	1,897

3. 초등스포츠강사 요구사항

(1) 상시·지속적 업무인 모든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으로 전환

❍ 초등스포츠강사는 한시적 사업이 아님. 전국의 시도교육에서 14년동안 지속 된 사업이고 같은 초등스포츠강사가 14년째 근무를 하고 있음.

❍ **노동부의 무기계약 관리규정 표준안 등에 따르면 교육감의 의지로 무기계약 전환 할 수 있음**

> 제5조(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
> ☞ 기관은 상시·지속적 업무라 하더라도 기간제법 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환할 의무가 없음. 다만, **기관의 판단에 따라 전환제외자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가능**

❍ 기존 근무자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 채용 절차가 아닌 재임용 절차를 통해 고용이 보장되어야 함. 법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

> 제4조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③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1. 강사로서의 자질
> 2. 복무 태도
> 3. 학생의 만족도

(2) 2년 이상 계약, 임용절차 간소화로 고용보장

❍ **교육부에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17.9.9.)**에 무기계약직 전환은 불가하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권고 사항이 있었음. 권고사항의 내용이 고용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나 최소한 권고 사항을 보장해야 함.

-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결정 (2017년 9월)

❖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17.9.9.)

- 학교회계직에 준하는 처우개선과 계약기간 연장, 계약절차 간소화 등 고용안정 방안 및 초등 스포츠강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함
- 이에 교육부는 초등 스포츠강사의 계약기간 연장(11개월→12개월), 급여 인상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처우 개선을 추진할 계획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 전환되지 못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차별을 해소 필요(43p)
- 고령이나 업무 특성에 따른 제외자에 대해서도 전환자와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 고용안정 방안 모색(44p)

※ 교육부 2018년도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계획(안)

2018년도 주요 사항

① 다음 사항 이행 권고

❖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17.9.9.)
- 학교회계직에 준하는 처우개선과 계약기간 연장, 계약절차 간소화 등 고용안정 방안 및 초등 스포츠강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함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 전환되지 못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차별을 해소 필요(43p)
- 고령이나 업무 특성에 따른 제외자에 대해서도 전환자와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 고용안정 방안 모색(44p)

② 근무 기간 : 11개월('17) → 12개월('18)
- 계약기간 전년도 대비 1개월 연장

③ 스포츠강사 1인당 연 사업비 : 21,307천원('17년, 11개월) → 28,535천원('18년, 12개월)

④ 지도수당 이외 근무수당(급양비·교통보조금·명절휴가비·맞춤형 복지비), 퇴직금 지급

⑤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스포츠강사 선발 방법 마련
-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채용이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계획에 따라 선발

Ⅱ 세부 추진 계획

[1] 교육청의 역할

□ 스포츠강사 선발

○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초등 스포츠강사 고용안정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권고

※ (예시) 고용 불안 해소 차원에서 기존 근무자 경력 우대 등 방안 마련

○ 시·도교육청별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방안을 마련하여 매년 신규 채용을 하되, 시·도 여건에 따라 스포츠강사 선발 방법 마련

※ 초등학교의 장이 스포츠강사를 재임용할 때에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을 따름

○ 스포츠강사 기경력자 지원의 경우 제출 서류 간소화 가능

※ 시·도교육청 자율선택 서류의 경우 교육청에서 간소화 추진 방안 마련·추진

○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스포츠강사 채용 관련 게시판 개설 권장

※ 스포츠강사 채용 공고를 해당 학교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재

- 교육부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계획에 따라 다수의 교육청이 계약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함. 경남 4년, 인천 3년은 평가를 활용, 경북 4년 인사협의회를 거쳐 동일 학교 근무 가능.

(3) 유급휴일, 병가, 특별휴가 등 근로기준법과 교육공무직 단체협약 내용 적용. 법상 모성보호 조항 등 철저히 준수.

❍ 교육부 지침에도 휴일, 휴가는 교육청별 또는 학교별 취업규칙 준수하라고 명시

<교육부,문체부 스포츠강사 지원계획>

○ 휴가는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별 취업규칙에 따른다.

○ 휴일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일 부여

-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은 무급휴무일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별 취업규칙 적용 가능

○ 근무시간 외에 스포츠강사 업무관련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 아침건강프로그램을 근무시간 외에 지도할 경우 누계 시간을 합산하여 연장근로 수당 지급

❍ 일부 지역에서 강사직종을 단체협약 교섭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때문에 교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단체협약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스포츠클럽 지도 및 대회 참가를 위해 토요일을 비롯하여 1일 8시간 근무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임. 단체협약을 통해 교육청이 학교에 정확히 안내하고 강제하도록 해야 함 (미지급 시, 매년 학교와 재계약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스포츠강사가 직접 문제 제기하기 쉽지 않음)

(4)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적용 및 처우개선 수당 동일 지급

❍ 지역별 기본급 금액이 다름.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적용.

❍ 근속수당, 상여금, 맞춤형복지비, 자녀학비보조금 등 차별적으로 지급하던 각종 수당을 교육공무직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함.